

직권재심에 따른 제재변경 공시

I. 재심 취지

- 아이비케이신용정보 채권관리부장 甲·乙이 수임사실통보 미이행 관련 '감봉3월'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
 - 법원이 동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법원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양정을 조정한 후 재조치하려는 것임

II. 당초 조치 내용(2023. 9. 15)

1. 조치대상사실

-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,
 - 아이비케이신용정보(주)는 2019.7.1.~2022.11.18. 기간중 ○○은행 으로부터 위임받은 카드 연체채권 중 2,007건*에 대해서 채권추심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* 아이비케이신용정보가 카드채권추심 위탁업무를 시작한 날(2019.7.1.)부터 검사종료일(2022.11.18.)까지 카드 연체채권 추심대상자 수

2. 조치 내용

☐ 채권관리부장 甲과 乙은 위 1. 조치대상사실의 행위자로서

- 단기채권에 대한 수임사실통보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위 책임을 물어 감봉3월로 조치

III. 재조치 내용

☐ 재조치 일자: 2026. 6. 25.

☐ 재조치 대상자 및 제재종류

- 채권관리부장 甲에 대한 '감봉3월' 조치를 '견책'으로 조치 변경
- 채권관리부장 乙에 대한 '감봉3월' 조치를 '견책'으로 조치 변경